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5 - 46 - 205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수료 부당산정 금지행위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지원금과 연계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 심 인 엘지유플러스(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엘지유플러스 빌딩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5. 9. 9.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i) 다단계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ii)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i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v)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다단계 판매원이 피심인과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게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ii) 다단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부터 다단계 판매원 및 가입자 현황 등 다단계영업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매 반기별 자료를 매년 1월과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와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의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에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액 : 2,37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4.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1,201천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9.7%를,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은 54,506억원으로 20.9%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14.12월말 기준)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출액 (점유율, %)
피심인	11,201 (19.7%)	54,506 (20.9%)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MVNO 가입자 포함

나. 다단계영업 현황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 시행('14.10.1)되기 전부터 다단계영업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여 왔는데, 피심인의 다단계영업을 통한 가입자(해지자를 제외한 누적기준) 규모는 '14.9.30일 기준 95,833명이었으며, 조사대상 기간('14.10.1.~'15.5.31.) 종료일 기준으로 254,535명으로 늘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약 2.65배 증가하였다.

피심인이 다단계 영업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조사 대상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이하 '다단계 유통점')은 아이에프씨아이, 엔이엑스티, 비앤에스 솔루션, 에버메르, 모티브비즈, 제이앤을*, 에이씨앤코리아, 아이원, JRC코리아,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모바일로드 등 12개이다.

* 제이앤을은 일반 대리점이며 다단계 판매업자인 고려한백과 계약하여 고려한백 판매원들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함

조사대상 기간 중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피싱인 가입건수는 182,493건(번호이동 101,997건, 신규가입 37,557건, 기기변경 42,939건)인데, 이중 번호이동 가입건수의 비중은 56%로서, 피싱인 전체 가입건수 중 번호이동 건수의 비중인 38%에 비하여 1.5배 높게 나타났다.

< 피싱인의 다단계영업을 통한 가입형태별 구분 >

(기간 : '14.10.1. ~ '15.5.31. 단위 : 건)

구 분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합계(%)
다단계 관련 가입건수(a)	101,997(56)	37,557(21)	42,939(24)	182,493(100)
전체 가입건수(b)	1,208,740(38)	834,790(26)	1,140,102(36)	3,183,632(100)
비 중(a/b)	8.44%	4.50%	3.77%	5.73%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싱인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은 40,305원인 반면, 다단계 유통점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은 54,687원으로 나타났다.

* 통화요금에 접속료, 국제정산, 도매제공 등 포함

< 피싱인의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 현황 >

(기간 : '14.10.1. ~ '15.5.31. 단위 : 건)

구 분	전체 ARPU	다단계 유통점 ARPU
금 액	40,305원	54,687원

조사대상 기간 중 다단계 유통점의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은 86.4%이며, 특정단말기 2종(G프로2, G3)의 가입자 비중이 61.8%로 나타났다.

< 피싱인의 고가요금제 가입자 현황 >

(기간 : '14.10.1. ~ '15.5.31, 단위 : 건)

구분	총 가입자 수	고가요금제 (62요금제 이상)	중저가 요금제 (62요금제 미만)
건수 (비율)	182,493 (100%)	(86.4%)	(13.6%)

< 피싱인의 단말기별 가입자 현황 >

(기간 : '14.10.1. ~ '15.5.31, 단위 : 건)

구분	총 판매건수	G프로2	G3	기 타
건 수 (비율)	182,493 (100%)	(34.0%)	(27.8%)	(38.2%)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간('14.10.1.~'15.5.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 12개 다단계 유통점을 대상으로 피심인의 (i)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이용자 가입 현황 (ii)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수당지급 현황 (iii)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과 요금수수료 현황 (iv) 다단계 유통점의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구매시 적용되는 정책서 (v) 다단계 유통점을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고객센터 민원 등을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현황 >

구 분	가입자 수	본사 및 본부	다단계 유통점	민원
조사대상	182,493	본 사 1개 영업단 1개	12개점	8,733건

가입자 표본은 피심인의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전체 가입건수 182,493건이며, 가입형태별로는 번호이동 101,997건, 신규가입 37,557건, 기기변경 42,939건이었다.

구 분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합계
조사표본	101,997	37,557	42,939	182,493

나. 행위사실

조사대상 기간 중 조사대상 다단계 유통점에서 모집한 가입자 건수 182,493건에 대하여 피심인의 제출자료와 현장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산정) 피심인은 다단계 영업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점(이하 '일반 대리점')에 비하여 8개 다단계 대리점에게 평균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였다.

<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현황(부가세 포함) >

구 분		일반 대리점	다단계 대리점(8개)*
요금수수료	계약서상	요금납부 금액의 7.7%	요금납부 금액의 12.1~19.8%
	1인당 평균		

* 씨아이, 엑스티, 솔루션, 코리아, 모바일(브이엔오(커뮤니케이션), 이노베이션(비즈), 티티(메르)

(지원금 과다 지급) 4개의 피심인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서 지원금 상한액(이통사 공시지원금 + 유통점 추가지원금 15%)을 초과하여 가입자 20,925명 중 1,565명에 대하여 지원금 상한액을 평균 약 53,900원 초과하는 금액을 판매수당 또는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용자에게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 지원금 과다 지급 위반현황 >

구분	조사대상	위반건수	과다 지급한 지원금			비 고
			전체	1인 평균	1인 평균 위반금액*	
커뮤니케이션	18,643건	1,184건	90,173천원	76천원	26,000원	판매수당
		326건	66,495천원	204천원	154,000원	페이백 (현금 지급)
비즈	764건	20건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200천원	유통점 추가지원금 15%+ 10천원	10,000원	판매수당
메르	781건	13건	1,140천원	88천원	38,000원	판매수당
앤울	737건	22건	3,810천원	173천원	123,000원	페이백 (포인트 현금 지급)
계	20,925건	1,565건	-	-	53.900원	-

* (1인 평균 위반금액) 편의상 1인 평균금액에서 현재 유통점에서 단말기 1대당 지급 가능한 법정 추가 지원금인 최대 약 50천원(33만원의 15%)을 뺀 금액임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4개 피심인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서 다단계 영업을 통해 이용자의 지위에서 가입한 85,720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판매수당*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직급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피심인의 차감정책과 연계하여 특정기간 이내에 서비스 해지나 요금제(부가서비스 포함)·기기 변경시 다단계 가입자들로부터 기지급한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환수하는 등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인이 가입한 단말기에 대하여 지급받은 수당

** 가입 이후 추가 가입자 유치에 따른 판매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직급포인트로 한정

특히, 일부 이용자에게는 특정단말기·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높은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제공하였다.

< 4개 다단계 유통점의 판매수당 및 직급포인트 지급현황 >

구 분	조사대상	판매수당		경제적 이익을 얻은 직급포인트		위반건수
		지급건수	평균지급액	지급건수	평균포인트	
씨아이	88,907	-	-	56,278	24만	56,278
엑스티	34,535	-	-	17,954	24만	17,954
커뮤니케이션	18,643	1,184	76천원	-	-	1,184
솔루션*	14,381	10,304	23천원	8,849	20만	10,304
계	156,466	11,488	-	83,081	-	85,720

* 위반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판매수당과 직급포인트를 동시 제공한 중복 건수(8,849건)는 1건으로 계산하였다.

< 피심인의 다단계 유통점에 대한 주요 차감정책 >

구 분	장려금 차감요건	차감정책
피심인 → 다단계 대리점	-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후 90일 이내 해지, 신규가입 180일 개통 미유지,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90일 이내 해지	- 장려금 반환

< 4개 다단계 유통점의 가입자에 대한 주요 차감정책* >

구 분	차감요건	차감내용
씨아이	- 92일 이내 요금제(신규가입은 182일) ·부가 서비스 변경, 92일 이내 명의변경·기기변경 등	- 가입자가 포함된 판매자에게 판매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임의의 징벌 부과
엑스티	- 가입 후 92일 이내 기기변경, 명의변경 및 요금제 변경시	- 판매수당 및 직급포인트 차감
커뮤니케이션	- 가입 후 91일 이내 해지시 - 주요 부가서비스 미유치시	- 지급된 수당환수 및 1만원 차감 - 1만원 차감
솔루션	- 가입 후 121일 이내 해지시 - 가입 후 92일 이내 부가서비스 해지시 - 가입 후 92일 이내 요금제 변경시	- 50만원 차감 발생된 모든수당 차감 - 5만원 차감 - 1만원 차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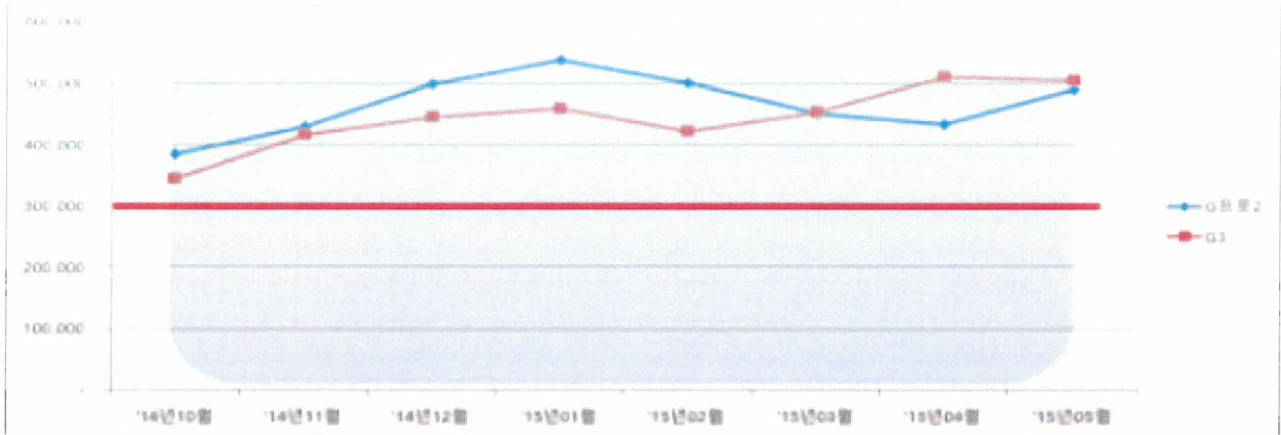
* 다단계 유통점은 기지급한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환수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차감정책'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 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은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① G프로2와 G3의 경우 월 평균 약 34만 4천원에서 약 53만 8천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②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4개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지원금 상한액(이통사 공시지원금 + 유통점 추가지원금 15%)을 초과하여 1,565건의 과다한 판매수당 명목의 금전 또는페이백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4개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85,720명에게 차별적인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특정단 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등 특정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조건을 정하였다.

< ① 피심인의 특정단말기에 대한 장려금(평균) 지급현황 (2014.10 ~ 2015.5) >

(단위 : 원)

구분	'14.10월	'14.11월	'14.12월	'15.01월	'15.02월	'15.03월	'15.04월	'15.05월
G프로2	384,026	429,377	498,411	538,768	501,419	450,334	432,785	488,894
G3	344,693	415,844	445,412	457,714	421,612	451,978	511,651	505,976



< ② 피심인의 다단계 대리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현황 (2014.10 ~ 2015.5) >

(단위 : 원)

구분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총계
건수	18,143	33,867	64,197	58,286	8,000	182,493
비율	10%	19%	35%	32%	4%	100%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10조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수수료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제50조(금지행위)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10조(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금지)** :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 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에서 (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고, (ii)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포함)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서비스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iii)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거나 특정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i)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하여 일반대리점에 비하여 평균 3.17배의 높은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다단계 대리점에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금지 행위)의 규정에, (ii) 4개 피심인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가입 건수 20,925건 중 1,565건에 대하여 평균 53,900원의 초과하는 금액을 판매수당 또는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의 규정에, (iii) 4개 피심인 관련 다단계 유통점에서 이용자의 지위에서 가입한 85,720명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판매수당 또는 직급 포인트를 제공하고, 특히 일부 이용자에게는 특정단말기·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높은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내 서비스 해지, 요금제·기기 변경시 다단계 가입자들에게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차감하는 등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규정에, (iv) 관련 다단계 대리점에게 G프로2와 G3에 대하여 월 평균 약 34만 4천원에서 약 53만 8천원까지 장려금을 제공하고, 최대 65만원까지 장려금을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다단계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1,565건의 과다한 판매수당 또는페이백을 지급하게 하는 등 다단계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85,720명에게 차별적인 판매수당 또는 직급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특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등 특정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조건을 정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의 규정에 각 위반된 것으로 인정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i) 다단계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ii)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i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v)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업무처리절차 개선

피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i) 다단계 판매원이 피심인과 이용자 간의 계약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게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ii) 다단계 대리점 및 판매점으로 부터 다단계 판매원 및 가입자 현황 등 다단계영업 관련 통계자료를 받아 시정 명령을 받은 날부터 매 반기별 자료를 매년 1월과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와 다단계 대리점 및 다단계 판매점의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시에 공표 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4일간(휴업일 제외) 각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6일간(휴업일 포함) 각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i) 다단계 대리점에게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ii)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iii)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이용(조건변경 포함)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v)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사업장 공표문 크기 :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 이상

※ 온라인 공표문 크기 : 전체화면의 6분의1이상 크기의 팝업 창

라.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부과기준율은 2.0%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988억원에 2.0%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19억 7,700만원(십만원 이하 절사)이다.

나. 필수적 가중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별표3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과거 위반행위 중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

다. 추가적 가중

사실조사 중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지속됨(위반행위 미시정)에 따라 기준 과징금에 20%를 가중한다.

라.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23억 7,200만원이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원장

최 성 준



부위원장

허 원 제



위 원

김 재 홍



위 원

이 기 주



위 원

고 삼 석

